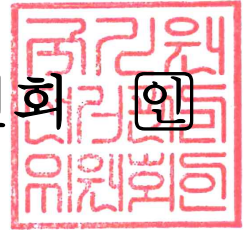


선거일 등 공고

2021년 1월 28일에 실시하는 국기원장보궐선거에 있어 「국기원 원장 선거관리규정」 제23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국기원 온라인투표규정」 제8조(투표 기간)에 따른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인



1. 선거명 : 국기원장보궐선거

2. 선거일시 및 투·개표장소

가. 선거일시 및 투표장소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재)투표 실시

선거인 구분	선거 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1차 투표	결선(재)투표		
1. 대한민국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선거인	2021. 1. 28.(목) 11:00~12:00	2021. 1. 28.(목) 13:00~14:00	국기원 (현장투표소)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
2. 해외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선거인	2021. 1. 27.(수) 12:00 ~2021. 1. 28.(목) 12:00	2021. 1. 28.(목) 13:00~18:00	해외 (거주지)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
3. 1번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021. 1. 27.(수) 12:00 ~2021. 1. 28.(목) 12:00	2021. 1. 28.(목) 13:00~18:00	대한민국 (거주지)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 전염병, 천재지변, 상해·질병 등으로 인한 거동불능자, 기타 사유

나. 개표 장소 :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

3. 선거인 : 「국기원 정관」 제10조에 따른 원장선출기구(선거인단)

4.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자격 및 등록요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및 「국기원 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별지]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참조

나. 신청기간 : 2021. 1. 17.(일) ~ 1. 18.(월)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다. 등록장소 : 국기원강의실

라. 구비서류

서 류 명	수 량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필수서류(피선거권 증명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후보자 추천서	50~70부
▪ 기탁금 납입 증명서	1부
▪ 사임(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컬러 3.5cm×4.5cm)	2매

※ 필수서류로 기재된 구비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등록신청 수리 불가)

※ 구비서류 서식 등은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시

- ※ 해외 국적자는 필수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해당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신하되,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외국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

마. 후보자 추천에 관한 안내

- 추천서 교부 기간 : 2021. 1. 4.(월) ~ 1. 18.(월)

- ※ 토요일 등 공휴일 제외

- 추천서 교부 장소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5. 입후보 안내 설명 자료 배부

가. 배부방법 : 국기원 홈페이지에 '입후보 안내 설명 자료(전자문서)' 게시

나. 게시기간 : 2021. 1. 4.(월) ~ 1. 15.(금) [12일간]

6.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21. 1. 19.(화) ~ 1. 27.(수) [9일간]

다. 선거운동방법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명함 배부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소견발표 녹화 영상의 국기원 홈페이지 또는 국기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게시

7. 소견발표 영상 제작·게시

가. 녹화촬영일시 : 2021. 1. 22.(금) 14:00

나. 녹화촬영장소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다. 영상촬영시간 : 후보자마다 10분 이내

라. 녹화촬영방법 : 「온라인투표규정」 제6조(소견발표) 참고

마. 영상게시기간 : 2021. 1. 24.(일) ~ 1. 27.(수) [4일간] (국기원 홈페이지 또는 국기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8.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행위 안내 자료 배부

가. 배부방법 : 국기원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행위 안내 자료(전자문서)' 게시

나. 게시기간 : 2021. 1. 18.(월) ~ 1. 27.(수) [10일간]

9.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 1. 14.(목) ~ 1. 16.(토) [3일간]

나. 열람장소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10. 기타사항

가. 후보자등록, 소견발표 및 투·개표 문의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 02-3469-0166, 0167)

나.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 문의 : 국기원 내 상주 전담반 (☎ 02-3469-0196)

[별지]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근 거	내 용	비 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국기원 정관」 제12조제1항	미성년자	
제12조제3항제1호	국기원 또는 기타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2조제3항제2호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12조제3항제3호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직권 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또는 제명된 사람	
제12조제3항제4호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2조제3항제5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함)	정관 제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제12조제3항제6호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	5. 13. 이후 발생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다음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사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 재단,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 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	